

자료번호	A1-2011-0206
자료명	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1 (7차) :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는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담당자들의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매월 전문가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부분이며,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과거 2004년부터 입법 논의가 시작된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이 올해 3월 드디어 제정되었고 지난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처리, 파기 단계별 공통된 보호 기준과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추진체계와 분쟁조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화된 규제에 의한 사회적 부담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단순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넘어 개인정보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의 각 항목별로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선택형 질문 외에도 서술형 답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0월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센터장 이민호

조사담당자: 연구원 윤태연 (tel: 02-567-2254)
연구원 김서화 (tel: 02-567-2182)
e-mail: research@kipa.re.kr
fax: 02-567-2221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1. 귀하는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외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심각하지 않음 ② 별로 심각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다소 심각함 ⑤ 매우 심각함

2. 귀하는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다음의 보기 가운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 및 분류
② 개인정보의 수집
③ 개인정보의 관리
④ 개인정보의 활용
⑤ 기타 ()

2-1. 위의 문항과 관련해, 귀하는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는 다음의 보기 가운데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개인정보 보호정책 방향 설정의 혼란
- ②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의 미비
- ③ 제도집행 추진체계 및 추진방식의 한계
- ④ 개인정보 관리자의 인식 부족 및 관리 소홀
- 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인식의 부족
- ⑥ 해커 및 불법 이용자 등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미약
- ⑦ 기타 ()

※ 다음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4. 지난 9월 30일부터 새롭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긍정적 (☞4-1) ② 긍정적 (☞4-1)
- ③ 부정적 (☞4-2) ④ 매우 부정적 (☞4-2) ⑤ 모르겠음/의견없음

4-1.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귀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현실적 적용가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 목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함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책적 필요성					
2)	개인정보보호법의 현실적 적용가능성					

6.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 항목들과 관련해 정책적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 목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함
1)	개인정보보호 적용 대상의 확대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및 비영리단체에까지 대상범위 확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원칙적 처리 금지					
4)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과 관련해 관련 공공기관은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					
5)	집단분쟁제도 및 단체소송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개인정보 단체소송제도 도입					

7.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 항목들과 관련해 현실적 적용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 목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함
1)	개인정보보호 적용 대상의 확대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및 비영리단체에까지 대상범위 확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원칙적 처리 금지					
4)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과 관련해 관련 공공기관은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					
5)	집단분쟁제도 및 단체소송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개인정보 단체소송제도 도입					

8.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처리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대상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대폭 축소 필요	다소 축소 필요	적정	다소 확대 필요	대폭 확대 필요
1)	민감정보 :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2)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8-1. 개인정보 처리 제한 대상으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대상범위와 관련해 귀하의 추가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위해 자율규제방식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대표성 있는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지정
- ② 다양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포괄 대상 범위의 확대
- ③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전문성 확보

- ④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법제도적 권한 강화
- ⑤ 민간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⑥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자율성·민주성 보장
- ⑦ 기타 ()

9-1.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 귀하의 추가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분쟁조정기구의 실무 지원 및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접수 등의 업무를 위해 전문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권의 범위를 둘러싸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간의 갈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이들 간의 역할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중심으로 한 업무 통합
- ②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중심으로 한 업무 통합
- ③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대상영역별 정보보호 업무의 분담
- ④ 정책지원과 기술지원의 업무수준별 정보보호 업무의 분담
- ⑤ 정보보호 업무전담을 위한 새로운 전문기관 설립
- ⑥ 기타 ()

12.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과 함께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귀하는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한 다음의 방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함
1)	직접적 규제 적용 시기의 유예 (ex.집행에 따른 단속과 처벌은 6개월 이후)					
2)	개인정보보호 적용대상의 축소 (ex.소규모 동호회나 동창회 등의 적용 배제)					
3)	개인정보 처리 기준의 완화 (ex.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작성의 간소화)					

13. 마지막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해 바람직한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